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행동 평가 및 계획: 사실 개요

2015 년 6 월, 출판 #CM60.03 Korean

소개

주 및 연방법은 모두 행동 평가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건을 제시합니다. 본 사실 개요는 이들 법률 내용과 관련된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행동 평가, 개입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또한 권익 옹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 개정 내용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얻을 수 있는 곳도 알려 드립니다.¹

¹ 2013 년 7 월,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예산 과정의 일환으로 Hughes Bill 법안의 대부분과, 학군에 행동 문제가 있는 특수 교육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일련의 법안과 규정의 폐기를 결정하였습니다. Hughes Bill 은 특정 상황에 대한 기능적 분석 평가를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학군에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이전 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자동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IEP 의 일부로 행동 평가 및 긍정적인 행동 개입이 여전히 필요하며 본 간행물에서도 논의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연방 및 주 법률에서는 어떤 학생이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필요한 경우 학군은 상세한 기능 행동 평가 및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을 포함하여 적절한 행동 관련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1. 학군은 자녀가 필요로 하는 행동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귀 자녀에게 자신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이 있을 경우, 연방 법률에서는 귀 자녀가 최소 제한 환경에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행동 지원 및 전략과 다른 서비스를 IEP 팀에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4 C.F.R. 제 300.324(a)(2),(b)(2)조] 학군에서는 귀 자녀가 교육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에서의 자신의 행동에 관한 도움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귀 자녀의 IEP 팀에서 판단한 평가, 계획, 서비스 또는 지원 유형을 제공해야 하며 귀 자녀의 행동을 이유로 특수일 수업이나 일 처리 프로그램 같은 보다 제한적인 환경으로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귀 자녀에게 공격적 또는 자해 행동 같은 심각한 행동이 있을 경우 학군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기능 분석 평가” 또는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IEP 팀에서 귀 자녀에게 기능 분석 평가 또는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이 필요한지 여부를 숙고함과 함께 행동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른 서비스나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귀 자녀가 행동 지원 계획을 받아 왔지만 귀 자녀의 문제 행동을 다루는 데 효과가 없었다면 IEP 팀에 이 점을 지적하고 IEP 팀에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보다 상세한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을 개발하도록 기능 분석 평가 같은 보다 상세한 기능 행동 평가를 귀 자녀가 받아야 한다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귀 자녀에게 자신이나 다른 아동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이 있다면 IEP 팀은 귀 자녀에게 제공할 특수 교육 및 서비스 관련 행동 및 보충적 보조 자료 및 서비스에

관한 진술과 귀 자녀의 행동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예측 가능한 연간 행동 목표에 관한 진술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34 C.F.R. 제 300.320(a)(2),(4)조] 귀 자녀에 관한 IEP 문서에 해당 행동을 다루는 서비스, 지원 또는 전략이나 귀 자녀의 행동 필요와 관련된 목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캘리포니아 교육부(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와의 규정 준수 고소 제기를 숙고하셔야 합니다. 귀 자녀에 관한 IEP 문서에 이들 행동 필요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없는 서비스, 지원 또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면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 제기를 숙고하셔야 합니다. [참조: 제 6 장, *정당한 절차 및 준수 불만 사항에 관한 정보(Information on Due Process and Compliance Complaints)*, 특수 교육의 권리와 책임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04001Ch06.>]

2. 제 아이가 필요한 행동 평가 및 서비스를 반드시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 자녀에게 자신의 학습이나 다른 아동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이 있을 경우 귀 자녀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귀 자녀의 행동을 다루는 데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한 IEP 회의에 대비한 서면 요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IEP 팀에서 고려해야 할 서비스로는 상세한 기능 행동 평가, 행동 지원 계획, 적절한 경우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 일대일 행동 보좌관, 행동 전문가와의 부모 및/또는 교사 교육 및 협의, 상담, 사회성 기술, 분노 관리 및/또는 귀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믿어지는 그 밖의 다른 서비스 및 전략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귀 자녀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 데 소용이 없었던 행동 지원 계획을 개발했거나 다른 행동 전략을 사용해온 경우 IEP 회의 전에 기능 행동 평가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평가는 귀 자녀의 행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예: 행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발생 빈도, 지속 시간, 발생 장소 그리고 귀 자녀가 문제 행동을 한 전후의 사건) 그리고 귀 자녀가 문제 행동을 한

이유와 이를 통해 귀 자녀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IEP 팀에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 자녀의 학습 환경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수 교육 프로그램 부서(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OSEP)은 IDEA 에 따라 기능적 행동 평가를 “평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FBA 를 요청할 때 다른 평가와 관련된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학군에 알려야 합니다.²

여러분이 기능 행동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평가 계획에 서명하면 학교는 그로부터 60 일 동안 평가를 수행하고 또 다른 IEP 회의를 열어서 평가 결과를 논의하고 귀 자녀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기타 긍정적 행동 전략을 결정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344(a)조]

학군에서 귀 자녀의 기능 행동 평가를 수행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평가가 귀 자녀에 필요한 행동 지원 또는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또는 다른 이유로 학군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공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IEE)를 요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34 C.F.R. 제 300.502 조;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329(b)조]

이 요청은 학군에 서면으로 하셔야 하며 특정 평가 부분 또는 여러분이 불복하는 평가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 방법에 대해 기술하셔야 합니다.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하실 경우 법에서는 이 평가에 대한 비용 지불에 동의하던지 아니면 적법 절차 청문회를 제기하여 학군의 평가가 적절했음을 보이도록 학군에 요구합니다. [34 C.F.R. 제 300.502 조;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329(b)조]

² 구속력이 있는 법은 아니지만 OSEP 의 메모는 다른 평가와 마찬가지로 FBA 에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학군을 촉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모에 대한 논의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http://www.cde.ca.gov/sp/se/ac/bipleafaq.asp>.

본 사실 개요 끝 부분에 행동과 관련하여 귀 자녀에 필요한 것을 결정하도록 IEP에 요청하고/하거나 기능 행동 평가를 요청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샘플 서한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군에서 제공한 기능 행동 평가에 불복하시는 경우 독립 교육 평가를 요청하기 위한 샘플 서한도 있습니다.

3. 학군에서 내 아이에게 통제 또는 격리 같은 비상 행동 개입을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법률 중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학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비상 개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귀 자녀가 예측 불가능하고 자발적인 행동을 한 경우 그리고
 2. 그러한 행동이 자신이나 다른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 및
3. 그러한 위험한 행동이 비상 개입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의 반응으로는 바로 예방할 수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521.1(a)조]

학군은 결코 계통적 긍정적 행동 개입 대신 행동 비상 계획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521.1(b)조]

학군은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개입처럼 학생의 건강이나 복지에 유해하거나, 학생의 적절한 수면, 식사, 식수, 대피, 잠자리, 물질적 쾌락 또는 욕실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귀 자녀에 악담, 조롱 또는 굴욕감을 줄 가능성이 높거나 귀 자녀에 과도한 정서적 외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유형의 개입을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521.1(d)조]

학교는 위험 행동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동안에만 귀 자녀에 대해 물리적 제지 같은 비상 개입을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만큼의 강제력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521.1(b),(c)조]

귀 자녀의 학교에서 귀 자녀에 금지된 종류의 개입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귀 자녀에 개별 맞춤형 긍정적 행동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채 경찰을 호출하는 등의 통제 또는 격리나 그 밖의 다른 개입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특수 교육 전문 변호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4. 학군에서 내 아이에게 물리적 제지 같은 비상 행동 개입을 사용하는 경우 내 아이와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나요?

학교에서 귀 자녀에 비상 행동 개입을 사용할 경우 학군은 1 수업일 안에 이 사실을 여러분에 통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521.1(e)조]

학군은 또한 해당 비상 행동 개입 사용을 초래한 사건에 대한 정보와 해당 개입 사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행동 비상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를 귀 자녀의 파일에 비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521.1(e)조] 학군은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이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귀 자녀에 비상 행동 개입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다면 이 보고서를 서면으로 요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귀 자녀에게 행동 개입 계획이 없었다면 학군은 해당 비상 개입 당일로부터 2 일 이내에 필요한 기능 행동 평가를 결정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동안 귀 자녀에 필요한 행동 계획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IEP 회의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521.1(g)조]

귀 자녀에게 긍정적 행동 개입 계획이 이미 있었다면 학군은 검토를 위해 IEP 회의 일정을 계획해야 하고 귀 자녀가 계획에서 다루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는 귀 자녀의 계획이 해당 행동을 처리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귀 자녀에 비상 행동 개입을 사용한 경우 이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6521.1(h)조]

귀 자녀의 학교에서 귀 자녀에 통제 또는 격리 같은 행동 비상 개입을 사용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귀 자녀를 위한 행동 지원 계획을 새로 개발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IEP 회의 일정을 계획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학군에 상기시켜 줘야 합니다. 학군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법규 준수 고소 제기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5.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교육부(CDE)는 행동 평가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지역 교육 기관(LEA)의 요구 사항을 다루는 상세한 질의 응답 문건을 출간했습니다. 해당 질의 응답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cde.ca.gov/sp/se/ac/bipleafaq.asp>

해당 문서는 위의 질문 2 에서 논의된 IDEA 하에서 행동 평가를 평가로 기술하는 OSEP 메모를 논의합니다.

6.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이 번 법률 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학교에서 있었던 귀 자녀의 행동과 관련하여 그 밖의 다른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Disability Rights California(1-800-776-5746)로 전화하셔서 조언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행정부 청문회 사무소(California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에도 학부모를 도울 수 있는 무료 및 저비용 변호사 목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916) 263-0550 으로 전화하셔서 사본을 요청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면 다음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사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http://www.documents.dgs.ca.gov/oah/SE/SE%20advocacy%20list.pdf>

기타 참고 자료:

샘플 서한

기능 행동 평가 및 IEP 회의를 요청하기 위한 샘플 서한

학부모

주소

전화 번호

일자

특수 교육 책임자

지역 통합 학군

주소

회신: 아동의 이름

특수 교육 책임자 님 귀중:

학군 담당자가 [평가일 삽입]에 완성한 저희 아이에 대한 평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 평가에는 저희 아이의 적절한 기능 행동 평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평가는 저희 아이의 행동 기능 및 그러한 행동에 일조했을 수 있는 환경 요소를 포함하여 저희 아이의 행동 필요에 대한 그림을 적절하게 보여 주지 못했다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34 미국 연방

규정집(CFR) 300. 502 조에 의하여 공공 비용으로 독립 기능 행동 평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502.

저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평가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경우 아래 문장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평가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모두 포함시키십시오.]

평가서의 근거가 되는 관찰, 인터뷰 및 기타 데이터가 제 아이의 행동의 기능 또는 목적을 확인하고 내 아이의 행동 필요를 모두 처리할 만큼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평가서에는 내 아이의 문제 행동 및/또는 내 아이의 긍정적 태도 행동의 선행 사건(직전에 발생한 사건)과 결과 사건(결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분석이 없으므로 IEP 팀에서 내 아이를 위한 긍정적 행동 개입을 개발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평가는 기능 행동 평가 수행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경험이 많은 직원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귀하는 내 아이에게 공공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를 제공하거나 적법 절차 고소 통지를 제기하여 청문회를 요청하고 기능 분석 평가가 적절했음을 증명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말고” 이 요청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34 미국 연방 규정집 300.502(b)조.)

연방 및 주 평가 요건에 따라 자격 있는 독립 평가인에 동의하고 독립적 기능 행동 평가를 진행시키시길 기대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 요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

학군에 공공 비용으로 독립적 기능 행동 평가를 요청하는 샘플 서한

학부모

주소

전화 번호

다음 사항도 요청 드립니다.

일자

특수 교육 책임자

지역 통합 학군

주소

회신: 아동의 이름

특수 교육 책임자 님 귀중:

제 아이를 기능 행동 평가에 회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아이는 자신의 학습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아이의 IEP 에 현재 포함되어 있는 행동 지원 계획과 개입 전략이 이러한 행동을 다루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15 일 안에 평가 계획을 받았으면 합니다. 저희는 제가 평가 계획에 서명한 당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귀하가 기능 행동 평가를 완료해서 이 평가를 논의하기 위한 IEP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IEP 회의 1 주일 전에 제게 평가 보고서 사본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선택적: 또한 기능 행동 평가를 수행하는 동안 제 아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동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IEP 회의 일정을 짜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본 요청 당일로부터 3 일 이내에 IEP 회의 일정을 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자료를 읽은 후 간단한 설문 조사를 통해 귀하의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영문 버전: <http://fs12.formsite.com/disabilityrightsca/form54/index.html>

스페인어 버전: <http://fs12.formsite.com/disabilityrightsca/form55/index.html>

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Disability Rights California)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자금 제공자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을 참조하십시오.

CaMHSA(California Mental Health Services Authority: 캘리포니아 정신 건강 서비스 기관)는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 증진을 추구하는 자치주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CaMHSA 가 실시하는 정신 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 프로그램은 주민 투표를 통과한 정신건강서비스법(Mental Health Services Act) 조례 63 조에 의거 자치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조례 63 조는 그간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주민 및 캘리포니아 내 다양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체제를 조달하고 구성하는 조례입니다.

